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연환경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78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연환경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2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2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자연환경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개정안은 자연환경의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6조(자연환경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체계·기능·복원----- -----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 ----- -----.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

여 연구 및 기술개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¹⁾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생태계 관련 연구·기술개발 사업으로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예산액		
			2022	2023	2024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R&D) (6431-778)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기술개발	습지생태계 서비스 및 가치평가 정량화 기술개발	2,000	2,600	1,248
	습지생태계 가치증진 기술개발	습지생태계 탄소흡수를 고려한 가치증진 기술개발	1,700	1,470	2,832
	소계		3,700	4,070	4,080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R&D) (1832-312)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기술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관리 모니터링 효율화 기술, 탄소흡수량 인벤토리 구축 기술,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기술	-	2,055	1,350
	소계		-	2,055	1,350
합계			3,700	6,125	5,430

※ 출처: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환경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등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²⁾하고 있고, 현

1)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22년 생태하천복원 우수사례 지자체 6곳 선정(환경부 보도자료, 2022.11.30.)

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규정³⁾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의 주체를 정부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연환경의 연구·기술개발 및 조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생태계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음⁴⁾.

3)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41

-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평가 및 증진 기술